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면 호	162
--------	-----

제출년월일 : 1996. 1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충북북부지역인 제천에 학생들의 교양증진, 정서순화, 여가선용을 위한 종합문화 시설인 제천학생회관이 설치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중 "충청북도학생회관"을 "충청북도립학생회관"으로 변경함.
- 현행 충청북도학생회관 이외에 제천학생회관을 설치함에 따라 학생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로 규정함(안 제2조).
- 회관의 운영중 "체육활동의 공간제공"을 추가함(안 제3조).
- 학생회관의 관장 "지방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복수직화함(안 제4조).
- 총무과의 하부조직에 "서무계, 관리계"를 두는 것을 삭제함(안 제7조).
- 운영과의 분장업무중 "전시실, 토의실, 음악실, 상담실, 회의실, 서예실운영"을 "전시실, 특별활동실, 회의실, 수영장, 로울러스케이트장운영"으로 변경함(안 제8조).
- 학생회관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정기휴관일 지정을 삭제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하도록 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사전에 예고한 다음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를 "회관 시설의 수리, 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임시 휴관일은 관장이 정한다"로 개정함(안 제11조).

- 학생회관 시설 사용료의 변동요인이 생길때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 사용료 기준 별표 2 를 삭제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한다"로 개정(안 제16조).

□ 개정근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법률 제5069호, 1995. 12. 29)

□ 조 례 안 : 덧붙임

□ 참고사항 : 덧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부 교육기관 설치승인서 사본
-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공문서 사본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충청북도학생회관"을 "충청북도립학생회관"으로 한다.

제1조중 "충청북도교육감 소속하에 충청북도학생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하에 충청북도립학생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관의 운영) 회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청소년의 문예 및 체육활동의 공간제공
2. 도서관 운영
3. 청소년에 대한 교육·문화활동 전개
4. 기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제1항중 "지방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7조중 "총무과에는 서무계, 관리계를 두며 과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총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로 한다.

제8조 제7호중 "전시실, 토의실, 음악실, 상담실, 회의실, 서예실 운영"을 "전시실, 특별활동실, 회의실, 수영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운영"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휴관일) ①회관의 정기휴관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하되,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회관시설의 수리, 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임시휴관일은 관장이 정한다.

제13조제1항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15조중 " 별표 2에 의한"을 "관장이 정한"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용료) 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사용에 관한 사용료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한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생회관의 명칭 및 위치

학생회관명	위 치
충청북도학생회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
제천학생회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470번지